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6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유용원 · 김종양
박덕흠 · 김선교 · 김용태
조지연 · 김태호 · 구자근
배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,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,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만원 초과분의 40%를,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만원 초과분의 15%를 각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.

이에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,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0%로, 2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%로 각각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

것임.

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(안 제58조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라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의 한도”를 “제3항의 한도”로 한다.

② 거주자(사업자인 거주자는 제외한다)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
1.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금 $\times$ 110분의 100
2.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10만원 $\times$ 110분의 10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10만원) $\times$ 100분의 60
3.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10만원 $\times$ 110분의 100 + 10만원 $\times$ 100분의 6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20만원) $\times$ 100분의 3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거주자(사업자인 거주자는 제외한다)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1.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 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금 × 110분의 100</u>
<u><신 설></u>	<u>2.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10만원 × 110분의 10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10만원) × 100분의 60</u>
<u><신 설></u>	<u>3.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10만원 × 110분의 100 + 10만원 × 1 00분의 60 + (고향사랑 기부 금 - 20만원) × 100분의 30</u>
<u>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</u>	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----</u>

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,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의 소득금액에서 「소득세법」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 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 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 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 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 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④ ----- ----- -----제3항의 한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